

성지언어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소속) 본 연구소는 대신대학 성지언어연구소라고 칭하며 대신대학교에소속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① 올바른 성경주석과 깊은 신학연구를 위하여 성경 고전어들을 가르친다.

②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반분야를 연구하며 이에 따른 정보제공,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내용) ① 방학 중에 여러 어학강좌를 개설한다.

② 필요한 경우에 어학 특강 및 세미나를 개설할 수 있다.

③ 언어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만든다.

④ 국내에서 성경의 현장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경 품물과 및 자료실을개발한다.

⑤ 필요한 경우에 성경의 배경연구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설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소장)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을 책임진다. 소장의 유고시에 총장은 연구소의 정규 연구원에게 소장직을 위임한다.

제5조(직원) ①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하여 간사 등의 유급직원을 둔다.

② 간사는 공개모집하여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이 인준한다.

③ 학교보조로 동계강좌를 위한 조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.

④ 과목 및 세미나 강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부서) ① 본 연구소에는 성경원어를 비롯한 고전어 및 현대어를 담당하는 언어분과와 성경배경연구 및 성지순례를 관장하는 성지분과를 둔다. 단, 어학강좌(히브리어, 헬라어)에 관한 상위 관장기관은 교무과로 한다.

제3장 재 정

제7조(수입원) 연구소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타 연구소 기준 학교 보조금
2. 기타 후원금

제8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9조(회계감사) 본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재정지출) 학교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기탁되는 수입을 포함하여 일체의 수입 및 지출은 총장의 결재에 의해 집행한다.

제4장 부 칙

- ① 본 규정의 시행세칙은 본 대학의 학칙을 준용하며 소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은인으로 정한다.
- ②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른다.